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519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5193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5105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9. 15.

판결선고 2021. 11. 1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51057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32,97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원상회복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2. 21. 접수 제2274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가 한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5행, 제8행의 각

“102,200,000원”을 “132,975,1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상회복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별지